

문화예술진흥법에 반영된 국어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최 용 기
(문화체육부 어문과)

우리 나라 어문 정책 역사에 있어 1994년 12월은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법률이 제정·공포되었지만, 국어 발전에 관한 법률이 성문화되기에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94. 12. 16. 문화예술진흥법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문화 예술의 '법률적 개념'에 어문을 추가함으로써 비로소 국어 발전에 관한 국가 차원의 필요한 사항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은 국가는 국어 바로 쓰기를 비롯하여 올바른 국어 생활과 국어 발전을 위해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어 정책 심의를 위해 '국어심의회'를 두어야 하며 국가는 어문 규범을 제정·고시하고 각종 인쇄물 및 방송 광고물 등은 어문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문화 예술의 개념에 '국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근거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제기되어 여러 번 검토와 심의를 거친 바 있으며, 이의 결과로 지난 '90년 초 문화부 발족을 계기로 그동안 교육부에서 관장하던 어문 정책을 문화부(현, 문화체육부)가 맡게 되었다.

그동안 '국어'에 관한 법령으로 오직 '국어심의회'규정(제정 69. 12. 4. 대통령령 4389호)이 있었으나, 이의 명백한 근거 법률이 없어 국가는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제정·공포하였음에도 언론매체, 옥외 광고물, 상표 등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국민 언어 생활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에 국어 어문 규정 준수 의무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고 학계 및 연구 단체에서 건의가 빈번하였다.

우리 부는 이러한 건의를 바탕으로 여러 각도에서 '국어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였으나, 국어에 관한 사항만을 따로 할 경우에는 국민 언어 생활을 국가가 지나치게 법적 규범으로 강제한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많으며, 법률로 할 조항이 다른 법률과 달리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포함하는 것이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따로 법률을 만들지 않고 '문화예술진흥법'에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우리 부의 제안과는 달리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 세계각국에 보급하기 위해서 이 법률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의견은 '문화예술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함으로써 문예진흥 영역만 넓혀져 순수예술의 진흥을 위한 법률이 인문과학 분야까지 포괄하게 되어 논란의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문예진흥기금 활용 영역이 확대되어 국가 준예산화로 전락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하고, 아울러 '국립국어연구원과 국어심의회 기능이 모호해 진다'는 주장이 강해 자칫 무산될 위험까지 있었다.

다시 우리 부는 답변에서 '우리 말을 다듬고 지키는 일과 한국어를 세계에 보급하는 일이야말로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며, 언어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요소이므로 국가는 국어 정책을 심사 숙고하여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문 규범을 잘 지키고 따라야만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국립국어연구원과 국어심의회 기능이 있어서, 제반 어문 규범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연구원이 조사·연구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국어심의회는 국어학계 원로 학자로 구성된 국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최고의 자문 기구'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정보화 시대에 관련하여 컴퓨터 표준 코드 제정, 한글 자판의 표준화 등도 이 법률 조항에 반영해야 하지만,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는 따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국어학적, 어문학적 측면에서 한글의 정보화·과학화에 대한 개별적 조항을 두는 것보다는 '국어의 발전 및 보급'과 같이 국어 전체에 대해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결국 열띤 논쟁을 거쳐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지원 대상 항목의 폭을 확대하고, 그동안의 창조자 지원 중심에서 향수권자까지 배려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결정되어 '국어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게 되었다.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포함된 '국어발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

제5조(국어 발전 등 계획 수립) 국가는 국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국어심의회) ① 문화체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 발전 및 보급을 위한 제
반시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에 국어심의회를 둔다.

② 국어심의회는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어문규범) ① 국가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
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이하 “어문규범”이라 한다)을 국어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문규범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
야 한다.

제8조(어문규범의 준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
어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 또는 공공용에 제공하기 위한 인쇄물, 방송광고물 등을 작성함에 있어
서 예술 창작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
다.